



FMD,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

대한한돈협회



우137-8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-19 제2축산회관 3층 / ☎(02)581-9751 ~ 4, 8 / Fax581-9768 ~ 9 담당:환경방역팀

문서번호 한돈협지 310-4호

시행일자 2024. 02. 13.

수신 임원 및 지부(회)장

참조

| | | | | |
|----|-----|--|----|--|
| 선결 | | | 지시 | |
| 접수 | 일자 | | 결재 | |
| | 시간 | | | |
| | 번호 | | 공람 | |
| | 처리과 | | | |
| | 담당자 | | | |

제목 액비 살포지 불일치 일부 완화 등 살포비 지원 사업 지침 변경 안내

1. 지난해 일부지자체에서 퇴·액비 살포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인계 시스템과 AgriX 액비살포 실적의 동일하지 않은문제로 인해 지원사업비가 일부 환수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.

2. 이에, 본회에서는 농식품부 감사관실 및 축산환경자원과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건의하였고 농식품부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수용하여 가축분뇨 이용 촉진(퇴·액비 살포비 지원)사업 지침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가축분뇨이용촉진(퇴·액비 살포비 지원) 지원 사업 지침 및 주요변경 내용을 지부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부(회)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받는 액비유통센터 등에 해당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주요 변경 사항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|--|
| 살포외 이용 관련 | - 현장점검기준 명확화(수시→분기1회) - 해외수출 지원요건 명확화(증빙자료 명확화) |
| 액비살포 관련 | - AgriX시스템과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살포지 오차 발생에 대한 완화조건 명시 (GPS기록 불일치 예외조항신설, 원거리 살포 등) |
| 퇴비살포 관련 | - 교반관리 의무화 권장(현장상황 고려) |

불임. 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(가축분뇨이용촉진) 지원사업 지침 1부 끝.

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

